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의2 각호를 제외한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다만,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7조2(정보공개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는다. 1. ~ 10. <생략>	제17조2(정보공개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</u> 1. ~ 10. <개정안과 같음>